

폐기물부담금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확정

EPS 평판, 수산물양식용 부자 등 해당

2008년부터
년차별
적용 실시

과도한 부담금인상 계획으로 지난 수년간 논란을 벌여 온 폐기물부담금 관련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27일 개정 공포되었다. 개정령 중 스티로폼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. (편집자 주)

■ 관련 개정 법령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(대통령령 제19971호, 2007. 3. 27.)

■ 주요 개정 내용

가 부담금 대상의 변경: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

부과대상

- 섬유제조업, 가죽제조업, 신발제조업, 출판업,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, 고무, 플라스틱 제조업, 조립금속제품 제조업,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,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,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, 전자부품, 영상 및 통신 장비, 의료, 정밀, 공학기기 및 시계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포장재
- 위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
-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포장재

EPS중

- 대상제품: 건축용 단열재, 수산물양식용 부자
- 제외제품: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하는 최종제품(섬유제품용 EPS 패드, 가전 부품 및 기계류 인충포장재, 육묘용 상자 등)

나. 부과 대상의 면제

-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
- 수입업자가 수입한 미화 9천 달러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
-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,000kg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
-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 된 플라스틱 양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포장재
-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, 보관,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 된 제품: 자동차, 군수차량, 건설기계, 선박, 어선, 항공기, 철도차량 등
-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(사업자단체)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
- 협약의 내용: 재활용의무율,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의 제출, 재활용 부과금

다. 부담금의 감면

- 연간 매출액 10억 원 또는 수입액 미화 9천 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
-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,000kg 또는 수입제품에 포함 된 플라스틱량 100kg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

라. 부담금 산출 기준

-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수입 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(관 및 단열재 포함):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
-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수입 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: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(예: 부자)

마.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 특례

- 2008년 ~ 2009년: 20/100kg당 단열재 15원, 부자 30원
- 2010년 ~ 2011년: 60/100kg당 단열재 45원, 부자 90원
- 2012년 이후: 100/100kg당 단열재 75원, 부자 150원